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28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우리시 조례 내 어려운 용어,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 나.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 변경)에 따른 부서명 정비
- 다. 그 밖의 경미한 오기 정정
- 라. 어려운 용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생략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이선복 (☎2133-6692)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명이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민관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

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제5호가목”을 “제10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

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주택실 건축기획과”를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

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방지하는”을 “방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보시스템과장에”를 “정보시스템과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컴퓨터화일”을 각각 “컴퓨터 파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컴퓨터화일”을 각각 “컴퓨터 파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징하는”을 “정하는”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설치기준란의 “주택법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로,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기획관”을 “규제혁신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평가담당관”을 “규제개선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3항”을 “법 제20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리버버스 운영 및 지원”을 “한강버스 운영 및 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16조제5호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창의행정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창의행정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창의행정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세종로 1-68번지”를 “세종대로 172”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
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
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9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

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
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
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4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
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19조제4항제1호”를 “제19조제5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

례」 제9조의2”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2조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u>특별한 사유</u> <u>가 없는 한</u>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특별한 사유</u> <u>가 없으면</u> -----.
제10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 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민</u> <u>관기관</u> 에 위탁·운영할 수 있 다. ② (생략)	제10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 ----- ----- ----- <u>민</u> <u>간기관</u> ----- --.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조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 운영 등에 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u>경제정책실장</u> 이 맡는다.	② ----- ----- <u>경제실장</u>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3조(준용)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준용) ----- ----- ----- ----- -----. ----- <u>제11조제3항</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조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제한장소 등) ① (생략)	제3조(제한장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상(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u>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u>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 ----- ----- <u>교육환경보호구역</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이 호 <u>다</u> 목에 한정하며, 이하 "시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목의 비율 이하로 건폐율 완화 가능하다.·나. (생략) 2. (생략) ④·⑤ (생략)	제3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 ----- <u>나</u> 목----- ----- ----- -----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①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① ----- ----- ----- -----.

1. · 2. (생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공회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 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하는 투자사업인 공연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u>제5호가목</u>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의 공연장과 공연장 중 바닥면적 2천 500제곱미터 이하의 음악당은 제외한다.) 4. ~ 15. (생략) ② · ③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 ----- <u>제10호가목</u> ----- ----- ----- ----- ----- 4. ~ 1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운영조직) 제4조의 기능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전시관을 <u>주</u> 택실 <u>건축기획과</u> 소속으로 둔다.	제5조(운영조직) ----- ----- <u>미래공간기획관</u> <u>미래공간담당관</u> ----.

신 · 구조문대비표

(제8조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8조(권고 및 후속 조치) ① · ② (생략)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기관의 장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권고 및 후속 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 -----.
제19조(피해자 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u>방지하는</u> 행위	제19조(피해자 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①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 <u>방치하는</u> -----

7.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u>여성가족정책실장은</u>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여성가족실장</u>----- ----- ----- ----- -----. 제20조(징계 등) ①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 ② (현행과 같음)
---	--

(제9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서 울특별시장의 공인은 <u>정보시스 템과장에</u> , 보조기관, 소속행정 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 관한다.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 ----- <u>정보시스 템과에</u> ----- ----- ----- ----- -----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생 략)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 이미지공인을 <u>컴퓨터파일로</u> 제 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 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 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 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 관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 고, 그 인영을 해당기관의 전자 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 로 <u>컴퓨터파일</u> 에 등록하게 한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컴퓨터 파일</u> ----- ----- ----- ----- -----. ③ ----- ----- ----- ----- ----- ----- -- <u>컴퓨터 파일</u> -----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
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
다.

④ (생 략)

[별지 제2호의2서식]

(생 략)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
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
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
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
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의2서식]

(현행과 같음)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
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
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
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
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0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개대상기관에서 <u>징하는</u>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7. ----- <u>징하는</u> --- ----- -----
8. ~ 16. (생략)	8. ~ 1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1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설물</th><th style="text-align: center;">설치기준</th></tr> </thead> <tbody> <tr> <td>1. 위락시설</td><td>시설면적 67㎡당 1대</td></tr> <tr> <td>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td><td>시설면적 100㎡당 1대</td></tr> <tr> <td>2-1.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 한다)</td><td>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td></tr> <tr> <td>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td><td>시설면적 134㎡당 1대</td></tr> <tr> <td>4. 단독주택</td><td>시설면적 50㎡초과 15</td></tr> </tbody> </table>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2-1.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 한다)	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	시설면적 50㎡초과 15	[별표 2]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설물</th><th style="text-align: center;">설치기준</th></tr> </thead> <tbody> <tr> <td>1. 위락시설</td><td>시설면적 67㎡당 1대</td></tr> <tr> <td>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td><td>시설면적 100㎡당 1대</td></tr> <tr> <td>2-1.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 한다)</td><td>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td></tr> <tr> <td>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td><td>시설면적 134㎡당 1대</td></tr> <tr> <td>4. 단독주택</td><td>시설면적 50㎡초과 15</td></tr> </tbody> </table>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2-1.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 한다)	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	시설면적 50㎡초과 15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2-1.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 한다)	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	시설면적 50㎡초과 15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2-1.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 한다)	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	시설면적 50㎡초과 15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다)	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 {(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다)	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 {(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u>주택법시행령 제3조</u>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 <u>주택법 시행령</u> 」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2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79조</u> 에 따른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같은 법</u> <u>시행령 제77조</u> -----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13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생략)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u>재정기획관</u> ,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③ ----- ----- ----- <u>규제혁신기획관</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평가담당관</u> 으로 한다.	⑤ ----- ----- <u>규제개선담당관</u> -----.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4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시장은 <u>법 제20조의2제3항</u> 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 <u>법 제20조의2제4항</u> ----- ----- ----- -----. 1. ~ 6.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5조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장 <u>리버버스</u> 운영 및 지원	제2장 <u>한강버스</u> 운영 및 지원
제6조(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한강버스 홍보 등 <u>리버버스</u>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 <u>한강버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운행 증진을 위한 시책) ① 시장은 한강버스의 안전한 운행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u>리버버스</u> 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사업자별 범규위반 현황, 선박사고 및 선박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운행 증진을 위한 시책) ① ----- ----- --- <u>한강버스</u>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운영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u>리버버스</u> 운영 및 환 경친화적 선박 보급과 관련하 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한강버스</u>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16조 서울특별시 홍보물 ·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생략)	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 · 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7조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 ----- ----- -----.
1. 내부위원 : <u>창의행정담당관</u> ,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1. ----- <u>조직담당관</u> -----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 ⑤ (생략)	제9조(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u>창의행정담당관</u>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자가 각각 맡는다.	⑥ ----- ----- ----- <u>조직담당관</u> ----- ----- -----.
제16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① (생략)	제16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제1항의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이 있는	② ----- ----- -----

때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18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현행	개정안
제26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u>창의행정담당관</u> 이 된다. ③ (생략)	제2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u>조직담당관</u> -----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9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광화문광장"이란 종로구 <u>세종로 1-68번지</u> 일대 광장 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내 설치된 부대시설물을 포함한다.	1. ----- <u>세종대로 172</u>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0조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21조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생략)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관 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 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 개하여야 한다.	② ----- -----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 에 관한 규정」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2조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① (생략)	제12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사전검토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요청할 경우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자치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조직, 예산 및 운영규정 등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자치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 -----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23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현행	개정안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 운영) ① · ② (생략) 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 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u>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u> 현장 안전 점검을 지원한다. ④ (생략)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4조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 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업무의 협조) ----- -----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25조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업무협조) ----- -----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26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종합 계획의 수립 · 시행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자치구 · 공공기관 법 인 또는 단체 및 입주자등과 관 리주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는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업무의 협조) ----- ----- -----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27조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생략)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정무역 단체의 장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28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1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정보)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교통사업자는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정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신 · 구조문대비표

(제29조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6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 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 -----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0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u>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특별한 사유가 없</u> <u>으면</u> ----- ----- -----.

신·구조문대비표

(제31조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생략)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보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치구청장, 지역교육청장, 시민, 사업자 등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2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따라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
제37조(시설물의 순찰) ①·② (생략) ③ 시장은 하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설치사용자에게 해당 설치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중지·철거 또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설치사용자는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따라야 한다.	제37조(시설물의 순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

신·구조문대비표

(제33조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제19조(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서울도서관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 도서관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 ----- ----- ----- ----- 특 <u>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4조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긴급구조지원활동) ① 현장 지휘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구조지원활동) ① --- ----- ----- -----. ----- ----- <u>특별한 사유가 없</u> <u>으면</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제35조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행) ① ----- ----- ----- ----- ----- ----- ----- ----- 트 <u>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6조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7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8조(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생략) ⑤ 사장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u> <u>한</u> 지체 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 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특별한 사유가 없으</u> <u>면</u>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9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조사 등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생 략)	제7조(조사 등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기술개발·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0조(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4조(사업계획·예산)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u>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사업계획·예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특별한 사유가 없</u> <u>으면</u>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1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시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u>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④ (생략)	제9조(시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illegible]

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북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중북운행구간의 정류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 ⑦ (생략)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제43조(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24조(의견청취) ① (생략)	제24조(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4조(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시책사업 추진) ① ~ ④ (생 략)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 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 공기관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u> <u>한</u>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시책사업 추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u> <u>면</u>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5조(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응급환자 이송) ① ~ ⑤ (생략)	제11조(응급환자 이송)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8조의2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법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⑥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제46조(「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현행	개정안
제13조(자료제출요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u>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u>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7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제19조의4(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사대상부서의 장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8조(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1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 구획) ① (생략)	제21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 구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 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지 정된 주차장의 운영기관은 <u>특별</u> <u>한 사유가 없는 한</u> 주차요금 면 제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 ----- ----- ----- ----- ----- ----- <u>특별</u> <u>한 사유가 없으면</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49조(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서울특별시 등등 시장 등의 책무) ① ~ ⑥ (생략) ⑦ 시장은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과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협조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등등 시장 등의 책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0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9조(위원장의 의회 출석 · 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u>특별한 사유가 없는</u> <u>한</u>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의회 출석 · 답변)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1조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생략)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2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2(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 대피소 · 무더위쉼터 · 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 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 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 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 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는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① ----- ----- ----- -----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② (생 략) 제53조(자치구 지역축제의 지도 · 감독) 시장은 법 제66조의11제2 항에 따른 자치구 지역축제 안 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 · 점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u>특별한 사유가 없는</u> <u>한</u>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자치구 지역축제의 지도 · 감독) ----- ----- ----- -----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3조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 · 관리인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자료요청) ① (생략) ② 구청장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자료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4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생략)	제7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보고서·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 -----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기반시설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생략)	제13조(기반시설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주체는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이에	② ----- ----- -----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따라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5조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입찰참가 자격 완화) ① (생략)	제7조(입찰참가 자격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 조건을 등록업종, 자격·면허 등에 대해 2종 이상 또는 복합 보유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이들 제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입찰참가업체가 공동계약 방식에 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②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6조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자치구 지역본부장과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제9조(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등)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 지역본부장에게 해당 지역의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현황,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 지역본부장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제9조(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제10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실무지원반의	제10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 ----- ----- -----

투입 등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 인근 지역본부장,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및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략)

--.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57조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16조(업무의 협조)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업무의 협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8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자료 요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받은 기관의 장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자료 요구) ----- ----- ----- ----- ----- ----- ----- <u>특별한 사유가</u> <u>없으면</u>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9조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의무) ①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위원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7조(위원의 의무) ①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0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및 <u>제19조제4항제1호</u> 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 <u>제19조제5항제1호가목</u> ----- ----- ----- --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1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25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제62조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략) ⑥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 례」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 례」 제10조의2-----.

신·구조문대비표

(제63조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 ① (생략) 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이를 따라야 한다. ③·④ (생략)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 -----. ③·④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64조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당 등) 시정고문의 자문 활동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 한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 <u>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u>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 ----- ----- ----- 「지방자치단체 <u>예산편성 운영기준</u> 」----- ----- ----- -----.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 내 어려운 용어의 순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이선복 주무관(☎2133-6692)